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동욱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422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1월 05일 발 의 자:김동욱, 강석주, 경기는

자: 김동욱,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김경훈, 김규남, 김영훈, 김영훈, 김영후, 김영철, 김용일, 김원태, 김영철, 김지향, 김춘곤, 김형재, 김혜지, 문성호, 김형재, 김혜지, 반성연, 박칠성, 박환희, 왕정영한, 박칠성, 박환희, 왕정영한, 사목자, 우기섭, 아양윤, 이왕준, 이상욱, 이왕준, 이용균, 이상욱, 항철구 회유희, 황유정, 항 의원(42명)

1. 제안이유

○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자 중 다른 추천자가 모두 추천을 완료한 경우 그 추천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함(안 제8조제6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 각 호의 추천자는 다른 추천자가 모두 추천을 완료한 경우 그 추천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의 특례)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8조제1항 각 호의 추천자 중 다른 추천자가 모두 추천을 완료한 경우 나머지 추천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~ ⑤	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~ ⑤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⑥ 제1항 각 호의 추천자는 다
	른 추천자가 모두 추천을 완료
	한 경우 그 추천을 완료한 날부
	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
	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<u>⑥</u> · <u>⑦</u> (생 략)	<u>⑦</u> ⋅ <u>⑧</u> (현행 제6항 및 제7항과
	같음)